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2(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·공급

제34조의2(수소발전량 구매자 등)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로서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(이하 “구매자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②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”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(이하 “구매량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자에게 배분한 것을 말한다.

1. 구매자가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력시장(이하 “전력시장”이라 한다)에서 직전년도 거래한 전력거래량
2.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

제34조의3(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) ①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“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
2.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
3.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
4. 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
5.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서 경쟁입찰 외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.

1.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

제34조의4(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)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.

제34조의5(연도별 구매량)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른 구매량은 직전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% 이내에서 연도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4조의6(구매이행비용의 회수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

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34조의7(입찰시장 관리기관)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
2. 입찰시장 또는 전력시장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는 임·직원이 50명 이상일 것
3. 수소발전량의 계량·정산과 수소발전소의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

제34조의8(거래수수료)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\text{수수료(원/킬로와트시간)} = \text{관리기관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} \div [\text{연간 예상 수소발전량(킬로와트시간)} \times 2]$

② 제1항의 연간 운영비는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시설비, 수선유지비, 인건비,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.

제34조의9(관리기관 지정신청 및 취소) ① 법 제25조의7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정관

2.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

3.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·기술능력·시설 및 장비 현황에
관한 자료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.

1.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

2. 제3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		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·공급
<신 설>				제34조의2(수소발전량 구매자 등)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수소 발전량을 구매하는 자로서 「전 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판매사 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(이하 “구매자”라 한다)를 말한다. ②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 량”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 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(이 하 “구매량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 자에게 배분한 것을 말한다. 1. 구매자가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력시장(이하 “전력시 장”이라 한다)에서 직전년도 거래한 전력거래량 2.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

<신 설>

<신 설>

는 수소발전량

제34조의3(입찰시장의 낙찰기준

등) ①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
“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
기준을 말한다.

1.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
2.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
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
3.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
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
4. 전력계통 및 전력 공급의 안
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
5.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
력이 있을 것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
따른 입찰시장에서 경쟁입찰 외
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
수 있다.

1.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
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
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

제34조의4(입찰시장에서의 계약

<신 설>

체결 방식)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.

<신 설>

제34조의5(연도별 구매량)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른 구매량은 직전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% 이내에서 연도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제34조의6(구매이행비용의 회수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34조의7(입찰시장 관리기관)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”이란 다

<신 설>

<신 설>

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·
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

2. 입찰시장 또는 전력시장의
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관련
경험이 있는 임·직원이 50명
이상일 것

3. 수소발전량의 계량·정산과
수소발전소의 전력계통 운영
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

제34조의8(거래수수료) ① 법 제
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
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
다.

$\text{수수료(원/킬로와트시간)} = \text{관리기관}$ $\text{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}$ $\div [\text{연간 예상 수소발전량(킬로와트}$ $\text{시간)} \times 2]$

② 제1항의 연간 운영비는 입찰
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
한 시설비, 수선유지비, 인건비,
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
다.

제34조의9(관리기관 지정신청 및
취소) ① 법 제25조의7제5항에

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정관

2.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

3.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
인력·기술능력·시설 및 장비
현황에 관한 자료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.

1.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
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
지 여부

2. 제3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
추었는지 여부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